

1. 제정 이유

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5769호, '25. 9. 23. 공포, '25. 10. 2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하여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난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긴급구조교육의 내용 구체화(안 제3조)
- 나. 긴급구조교육을 관리자, 실무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(안 제4조)
- 다. 담당 교육기관 지정 시 교육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(안 제5조)
- 라. 긴급구조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특이사항 없음

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긴급구조교육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 대응 관련 정책 방향 및 위기관리
2.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 대응 행정실무
3. 해양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대응 이론 및 기술
4.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, 응급처치,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(이하 “중앙구조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교육과정) 제3조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

실시한다.

1. 긴급구조교육 관리자 과정
2. 긴급구조교육 실무자 과정
3. 중앙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

제5조(교육기관의 지정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5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긴급구조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세부기준 등)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